◉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2024년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1.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 목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54
	알루미늄캔		0.807
유리병			0.728
종이팩	일반팩		0.293
	멸균팩		0.14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	단일무색	0.768
		단일유색	0.728
		복합재질	0.894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 제외)		0.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0.532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408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93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860
	윤활유용기		0.826
윤활유			0.765
1회용 비닐장갑			0.860
타이어			0.800
형광등			0.969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전구형		0.120
	직관형		0.12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29
산업용 필름			0.636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99
안전망			0.383
어망			0.410
로프			0.231
폴리에틸렌관			0.102
폴리염화비닐(PVC)제품			0.101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0.518
파렛트			0.146
플라스틱 운반상자			0.205
창틀·문틀			0.154
바닥재			0.225
건축용 단열재			0.097
전력·통신선			0.17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502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62
	리튬전지	0.463
	니켈·카드뮴전지	0.486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0.338
	니켈수소전지	0.16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604
김발장		0.807

2. 2024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품 목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소주	표준용기	0.871
	비표준용기	0.805
맥주		0.810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11
음료류		0.889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